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| 의안 번호 | 149 |
|---|---|

2019. 10. 23.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**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07. 05. 이상애 의원 등 7명**

**나. 상정의결**

-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19. 7. 18.)

  **“ 심사보류 ”**

- 제2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19. 10. 17.)

  **“ 수정가결 ”**

## 2. 제안이유( 제안설명: 대표발의자 이상애 의원 )

○ 핵가족화 심화,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양육환경 및 사회변화에 따라 아동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. 이에 따라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여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다함께 돌봄 사업 및 돌봄 서비스에 관한 사항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

라.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마.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)

## 4.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저출산・고령사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논의 필요

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.

## 5. 검토보고 요지( 전문위원 : 이상원 )

○ 본 건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(의안의 발의)에 따라 이상애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여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

○ 안 제2조(정의)

– 제1호에서 “아동”의 정의를 12세 이하의 사람(주민등록등재)과 초등학생(구에 소재한 초등학교)으로 규정하였음. 참고적으로 「아동복지법」[1] 및 「아이돌봄 지원법」[2] 에서는 각각의 연령을 구분 명시하고 있음

–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“다함께 돌봄”, “돌봄 서비스”, “돌봄 시설”을 각각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)제1항은 매년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, 해마다 수립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, 제2항에는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한 바, 각 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.

○ 안 제5조(다함께 돌봄 사업)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명시하고,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, 기관 및 단체의 현황 설명이 필요함. 또한 각 사업별,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 및 추진 계획(예정)인 사업을 구분한 상세 설명이 요구됨

---

1) **「아동복지법」**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아동"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2) **「아이돌봄 지원법」**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아이"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.

○ 안 제6조(돌봄 서비스 지원)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명시한 바, 지원대상, 지원 방법, 지원내역 등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

○ 안 제8조(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)는 「아동복지법」[3]에 규정된 다함께 돌봄센터와 구분(차이점)설명 및 검토가 필요함

○ 안 제9조(보험)는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바, 기 보험가입 현황(여부)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

○ 안 제13조(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)부터 안 제18조(수당)까지는 다함께 돌봄에 관한 주요시책을 협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는 바, 심의·자문사항에 대한 세부 설명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○ 이에, 본 조례 제정으로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. 또한 '다른 자치단체의 유사 조례 제정현황[4]' 등을 감안하면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

반면에, 현재 구에서는 돌봄사업이 과별(◇ 보육지원과 -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, 아이돌봄 지원, 강남 SOS 공동육아·돌봄카페 운영, 열린육아방운영, ◇ 여성가족과 -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, 초등생 온종일 돌봄 등), 중앙부처별(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)로 산재되어 있는 바, 본 제정안과 각 돌봄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차이(구분)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임

---

3) **「아동복지법」**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 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 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4) 조례제정현황(2019년 6월 19일 현재) : 서울특별시, 강동구, 광진구, 구로구, 동대문구, 동작구, 마초구, 서대문구, 성동구, 양천구, 종로구

## 6. 질의 및 답변 요지

□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19. 07. 18.)

○ 질 의: 타구에서 제정한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하는 규정이 있는데 본 조례안에도 비용 징수와 관련한 조항을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

○ 답 변: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실비 징수 조항이 필요한 것 같다고 사료됨

○ 질 의: 현재 우리 구에 돌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

○ 답 변: 돌봄 관련 조례는 제정된 바 없음

○ 질 의: 안 제8조제4항 돌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

○ 답 변: 돌봄 관련 조례는 제정된 바 없음

□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19. 07. 18.)

○ 질의과정 중, 이향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심사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보류됨

□ 제2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19. 10. 17.)

○ 질 의: 안 제9조에 따르면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것인지

○ 답 변: 전체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임

## 7. 토론 요지

○ 토론과정 중, 안지연 의원으로부터 돌봄서비스의 지원 범위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돌봄서비스 제공 비용 징수 및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

8. 심사 결과 : “수정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

# 수 정 안

| 관련의안번호 |
| --- |
| 제149호 |

발의일자 : 2019. 10. 17.
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는 등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○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수정함(안 제5조)

○ 돌봄 서비스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)

○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수정함(안 제7조제1항)

○ 돌봄 서비스 제공 비용의 징수 규정을 신설함(안 제8조)

○ 돌봄 서비스 제공 비용의 면제 규정을 신설함(안 제9조)

○ 조문 순서 등을 수정함(안 제8조부터 안 제19조까지)

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

# 수 정 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다함께돌봄사업) 구청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,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
2.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
3. 다함께 돌봄 관련 민·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
4. 다함께 돌봄 수요와 공급에 관한 조사 사업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안 제6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아동의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·예체능·체험활동 지원
2.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적인 급식·간식 지원
3. 가정의 양육환경 안정을 위한 일시·긴급 돌봄 지원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

안 제7조 제1항 중 “한부모가족”을 “근로 중인 한부모가족”으로 한다.

안 제8조부터 안 제19조까지를 각각 안 제10조부터 안 제21조로 하고, 안 제8조 및 안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비용의 징수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.

1.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
2. 이용 아동의 급·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
3.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

제9조(비용의 면제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

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제 정 안 | 수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5조(다함께돌봄사업) ① 구청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,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br>1.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<br>2.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<br>3. 다함께 돌봄 관련 민·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<br>4. 다함께 돌봄 수요와 공급에 관한 조사 사업<br>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br>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| 제5조(다함께돌봄사업) 구청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,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br>1.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<br>2.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<br>3. 다함께 돌봄 관련 민·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<br>4. 다함께 돌봄 수요와 공급에 관한 조사 사업<br>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|
| 제6조(돌봄 서비스 지원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<br>1. 아동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<br>2.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적인 급식·간식 지원 | 제6조(돌봄 서비스 지원)(제정안과 같음)<br>1. 아동의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·예체능·체험활동 지원<br>2.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적인 급식·간식 지원 |

| 제 정 안 | 수 정 안 |
| --- | --- |
| 3. 아동의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·예체능·체험활동 지원<br>4. 가정의 양육환경 안정을 위한 일시·긴급 돌봄 지원<br>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| 3. 가정의 양육환경 안정을 위한 일시·긴급 돌봄 지원<br>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|
| 제7조(돌봄서비스의 우선지원)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맞벌이 가정, 한부모가족, 다자녀 가구,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. | 제7조(돌봄서비스의 우선지원) ① ----------, 근로 중인 한부모가족, ----------. |
| ②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. | ② (제정안과 같음) |
| <신 설> | 제8조(비용의 징수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.<br>1.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<br>2. 이용 아동의 급·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<br>3.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|
| <신 설> | 제9조(비용의 면제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. |

| 제 정 안 | 수 정 안 |
| --- | --- |
| |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<br>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<br>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<br>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<br>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<br>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|
| 제8조(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) | 제10조(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) (제정안 제8조와 같음) |
| 제9조(보험) | 제11조(보험) (제정안 제9조와 같음) |
| 제10조(지도 · 감독) | 제12조(지도 · 감독) (제정안 제10조와 같음) |
| 제11조(예산 · 결산) | 제13조(예산 · 결산) (제정안 제11조와 같음) |
| 제12조(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) | 제14조(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) (제정안 제12조와 같음) |
| 제13조(협의회의 구성) | 제15조(협의회의 구성) (제정안 제13조와 같음) |
| 제14조(위원의 임기) | 제16조(위원의 임기) (제정안 제14조 |

| 제 정 안 | 수 정 안 |
| --- | --- |
| | 와 같음) |
| 제1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| 제1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(제정안 제15조와 같음) |
| 제16조(위원의 해촉) | 제18조(위원의 해촉)(제정안 제16조와 같음) |
| 제17조(회의운영) | 제19조(회의운영)(제정안 제17조와 같음) |
| 제18조(수당) | 제20조(수당)(제정안 제18조와 같음) |
| 제19조(시행규칙) | 제21조(시행규칙)(제정안 제19조와 같음) |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
## (이상애의원 대표발의)

| 의 안 번 호 | 149 |
|---|---|

발의연월일 : 2019. 7. 5.
발 의 자 : 이상애·안지연·이향숙·박다미·김광심·허주연·김현정(이상7인)

## 1. 제안이유

핵가족화 심화,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양육환경 및 사회변화에 따라 아동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. 이에 따라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여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다함께 돌봄 사업 및 돌봄 서비스에 관한 사항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

라.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마.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저출산・고령사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논의 필요

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다함께 돌봄”이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한 보호 및 양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돌봄 서비스”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보호·양육, 교육·놀이 프로그램, 맞춤형 정보·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4. “돌봄 시설”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인 돌봄 지원 등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함께 돌봄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다함께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

2. 다함께 돌봄에 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

3.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

4.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다함께 돌봄 사업) ① 구청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,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

2.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

3. 다함께 돌봄 관련 민·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

4. 다함께 돌봄 수요와 공급에 관한 조사 사업
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돌봄 서비스 지원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

2.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적인 급식·간식 지원

3. 아동의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·예체능·체험활동 지원

4. 가정의 양육환경 안정을 위한 일시·긴급 돌봄 지원
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

제7조(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)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의 지원 우선 순위

를 맞벌이 가정, 한부모가족, 다자녀 가구,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 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아동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돌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보험)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.

제10조(지도·감독)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의 관리, 운영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예산·결산)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는 돌봄 시설이나 단체 등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에 관한 주요 시책을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

남구 지역돌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제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2.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3. 관련 기관과의 다함께 돌봄 공동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

4. 다함께 돌봄 수요에 맞는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

제13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구의회 의원

2. 관내 초등학교의 교장

3.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구 소속 관계 공무원

4. 돌봄 시설의 관계자

5. 그 밖에 아동 돌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1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6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17조(회의운영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여야 한다.

제18조(수당)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

급할 수 있다. 다만, 구의회 의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관계법령】

❑ 아동복지법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❑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**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

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